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00. O. O. 피고의 소유인 OO시 OO구 OO길 OO 건물 중 점 포 60㎡를 임차보증금 50,000,000원,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 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그 뒤 원고는 위 점포에 입주하여 요식업을 하던 중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

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었습니다.

- 3. 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을 말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목모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되기 전에는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점포를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.
- 4.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지금까지도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
- 5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임대차계 약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임대차계약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^^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□ 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□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 복 절 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,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,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·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,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·입증책임을 부담함(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14664,14671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

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생물하는 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